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 | |
|----------------|------|
| 선 람 | 기관의장 |
| | |

제 8 호 2015. 1. 20.(화)

훈 령

○남원시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1

공 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

○남원시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53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공무원직 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월 20일

남원시 훈령 제 339 호

남원시 공무원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원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전환자 : 「‘12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인력
-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1항 관련)

| 구분 | 계 | 행정실무원 | | | | 시설관리원 | | | | 도로보수원 | 환경관리원 | 물리치료사 | 의무급여관리사 | 전환자(국비사업) | | | |
|----------|------------|------------|-----------|-----------|----------|-----------|-----------|-----------|----------|-----------|-----------|-----------|----------|-----------|----------|----------|----------|
| | | 소계 | 행정보조 | 청사환경 | 진료보조 | 소계 | 시설비유관 | 현장작업장리 | 현장단감 | | | | | 소계 | 통합사례관리사 | 영양플러스 | 방문보건관리 |
| 계 | 231 | 74 | 67 | 4 | 3 | 36 | 8 | 23 | 5 | 12 | 84 | 9 | 2 | 14 | 3 | 2 | 9 |
| 본 청 | 소계 | 137 | 35 | 32 | 3 | 0 | 12 | 0 | 7 | 5 | 12 | 73 | 0 | 2 | 3 | 3 | 0 |
| | 기획실 | 2 | 1 | 1 | | | 1 | | 1 | | | | | | 0 | | |
| | 감사실 | 0 | 0 | | | | 0 | | | | | | | | 0 | | |
| | 시민소통실 | 1 | 1 | 1 | | | 0 | | | | | | | | 0 | | |
| | 총무과 | 8 | 6 | 3 | 3 | | 2 | | 2 | | | | | | 0 | | |
| | 홍보전산과 | 2 | 1 | 1 | | | 1 | | 1 | | | | | | 0 | | |
| | 민원과 | 3 | 3 | 3 | | | 0 | | | | | | | | 0 | | |
| | 문화관광과 | 7 | 7 | 7 | | | 0 | | | | | | | | 0 | | |
| | 교육체육과 | 2 | 0 | | | | 0 | | | | | 2 | | | 0 | | |
| | 주민복지과 | 7 | 2 | 2 | | | 0 | | | | | | 2 | 3 | 3 | | |
| | 여성가족과 | 1 | 1 | 1 | | | 0 | | | | | | | | 0 | | |
| | 환경과 | 71 | 0 | | | | 0 | | | | | 71 | | | 0 | | |
| | 재정과 | 3 | 3 | 3 | | | 0 | | | | | | | | 0 | | |
| | 경제과 | 4 | 3 | 3 | | | 1 | | | 1 | | | | | 0 | | |
| | 안전재난과 | 0 | 0 | | | | 0 | | | | | | | | 0 | | |
| | 농정과 | 2 | 2 | 2 | | | 0 | | | | | | | | 0 | | |
| | 원예허브과 | 3 | 1 | 1 | | | 2 | | 2 | | | | | | 0 | | |
| | 축산과 | 1 | 1 | 1 | | | 0 | | | | | | | | 0 | | |
| | 산림과 | 1 | 0 | | | | 1 | | 1 | | | | | | 0 | | |
| | 도시과 | 1 | 1 | 1 | | | 0 | | | | | | | | 0 | | |
| 건설과 | 13 | 1 | 1 | | | 0 | | | | 12 | | | | 0 | | | |
| 교통과 | 5 | 1 | 1 | | | 4 | | | 4 | | | | | 0 | | | |
| 건축과 | 0 | 0 | | | | 0 | | | | | | | | 0 | | | |
| 직속기관 | 소계 | 31 | 6 | 3 | | 3 | 5 | 5 | | | | 9 | | 11 | | 2 | 9 |
| | 보건소 | 23 | 3 | | | 3 | 0 | | | | | 9 | | 11 | | 2 | 9 |
| | 농업기술센터 | 8 | 3 | 3 | | | 5 | | 5 | | | | | 0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생 략) 1. ~ 7. (생 략) <u><신 설></u> |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u>8. 전환자 : 「‘12공공부문 비정 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 라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인력</u> |

남원시 공고 제2015 - 96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20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제한 조항을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투자기반 조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주민 의견서 첨부 규정 삭제(안 제6조 제1항 2호)
-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안 제17조 제2호)
- 다.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안 제19조 1호)
- 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안 제26조)
-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69조)
- 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조정(안 제31조제4호)
- 사.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변경하여 행위 제한 완화(안 제31조제19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02월0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전화 : 063-620-6456, FAX : 063-620-671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자 이영호(전화 : 063-620-64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제한 조항을 조정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투자기반 조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주민 의견서 자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제2호)
-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변경(안 제17조제2호)
- 다.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확대(안 제19조제1호)
- 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안 제26조)
-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69조)
- 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조정(안 별표 5)
- 사.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변경하여 행위 제한 완화(안 별표 20)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 . ~ 2015. 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수립하고자 할”을 “수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개최하고자 할 때”를 “개최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을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으로, “집담회”를 “간담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를 “도시기본계획안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시”를 “공청회에”로, “등을”을 “과 여비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을 “보완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을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읍·면사무소·동”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을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아니하는 때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9조 제1호 중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율”을 “이자율”로, “법 제47조제3항의 에”를 “법 제47조제3항에”로, “시장이 이를”을 “시장이”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 중 “차목·타목 및 과목”을 “거목·더목 및 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 제7호 중 “혼재한”을 “섞여 있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수립하고”를 “수립하여”로,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가목 본문 중 “25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5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1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있을 때”를 각각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귀속될 때”를 “귀속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 제1호 중 “2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에 한”을 “토지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한하고”를 “한정하고”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을 “따라 개발행위를 시행하려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에 대하여”를 “지역에”로, “초래하지”를 “블러 일으키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을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에 관하여”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행위로 인하여”를 각각 “행위로”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차목·타목 및 과목”을 “거목·더목 및 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에 대해서는”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를 “2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1500제곱미터”를 “1천5백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반하지”를 “어긋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경우에는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지 아목**”을 “**부터 아목까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또는 도**”를 “**또는 전라북도**”로, “**시급성을 요한다**”를 “**시급성이 필요하다**”로 한다.

제55조제7호 중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를 “**경관지구(「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저촉**”을 “**불일치**”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5항제3호**”로, “**것으로서**”를 “**것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용적률**”을 “**용적률**”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적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다른**”을 “**다른**”으로,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를 “**위촉하며,**”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및 관련분야**”를 “**관련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

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제2항 중 “위원은 2”를 “위원은 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을 “심의·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자문”을 “심의·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심의자문”을 “심의·자문”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중 “요청하는 때”를 “요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5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83조 중 “준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별표 20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도시계획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u>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u>과 그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u>도지사의 승인을 얻</u>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p>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u>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u>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u>의한</u>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u>시도시계획위원회의</u>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p> <p>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p> |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도시계획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위임된</u>----- ----- <u>시행에</u>----- ----- -----.</p> <p>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 <u>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u>----- ----- ----- -----.</p> <p>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 <u>수립하려는</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따른</u> ----- ----- <u>시도시계획위원회</u> <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u> ----- -----.</p> <p>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p> |

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최하려는 경우-----

-----.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

----- 간담회-----.

④ ----- 도시 기본계획안 에-----
-----.

⑤ -----
----- 공청회에-----

----- 과 여비를 -----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
-----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
-----.

<삭 제>

<삭 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 보완사항은-----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읍·면사무소·동-----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 반영하려는-----
-----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 아니하면-----
-----.

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단서 신설>

제12조(공동구협회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 1.·2. (생략)

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 .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협회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등에-----

-----.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 이자율-----
-- 법 제47조제3항에-----

----- 시장이-----.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 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

3. -----
----- 거목·더
목 및 러목-----

② -----

----- 한정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 1. ~ 6. (현행과 같음)
- 7. ----- 선
여 있는 -----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수립하여 -----

----- 조례 및 시

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행규칙-----.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 1. (현행과 같음)
- 2. -----

가. -----

50제곱미터 -----
-. -----
-----.

나. -----

----- 150
제곱미터 ----- . -

-----.

다.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다. (생략)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 6. (생략)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

다.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따라 -----

4.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

-----.

- 1. -----
----- 인정될 경우
- 2. -----
----- 있을 경우
- 3. -----
----- 있을 경우
- 4. ----- 필요한 경우
- 5. -----
----- 귀속될 경우
- 6. -----
-----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 4. (생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나. (생략)

2.·3. (생략)

4. 별표 1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절개지

 -----.

1. ----- 3만제곱미터 ---

2.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토지에 한정-----
 ---. -----

 ---.

1. -----

 ----- 제외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
 -----.

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
 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
 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
 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
 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
 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과 제29조의 공공단체가 공
 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행위
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한정하고-----

----- 하려
는-----
 -.

② -----
 ----- 위원회

의-----
 -----.

1. -----

 ---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

2. -----

 - 따라 개발행위를 시행하려는---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여야 하고,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생략)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생략)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 4. (생략)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

----- 따라-----

-----.

3. -----
----- 설치-----

-.

4. (현행과 같음)

5. -----

----- 따른다.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

1. ----- 따른-----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 조례」 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4. (생략)

----- 「건축법」 -----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

경우에 한정-----.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

- 1. ----- 행위로 -----
- 2. ----- 행위로 -----
- 3. ----- 행위로 -----
- 4. (현행과 같음)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

행위로-----

--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

----- 위원회의 -----

-----.

1.·2.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회의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거

(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
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바. (생략)

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
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
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
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
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
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
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
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
가를 하기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목·더목 및 러목-----

마.·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위원회의-----

④ -----
----- 지역은-----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 -----

-----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의-----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

----- 20퍼센트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위원회의 -----

-----.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위원회의 -----

-----.

1. ~ 5. (현행과 같음)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① (생략)
-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제5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

 ----- 1천5
 백제곱미터----- . -----
 ----- 따라-----

 ----- 위
 원회의-----

 ----- .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 . -----

 ----- 예외로 한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 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 위원회의-----

----- 어긋나지 -----

-.

③ -----

--- 위원회의-----

-.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외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를 적용하는 대지

3. 위원회의-----
----- 따른 -----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에는 위원회의-----

④ -----
----- 위원회의-----

----- 인정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

----- 부터 아목까지-----

----- 한정한다)-----

또는 건축물

4. (생 략)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 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생 략)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

4. (현행과 같음)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

----- 해칠-----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

-----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생략)
- 2.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6. (생략)
-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

-----.

- 1. (현행과 같음)
- 2. ---- 또는 전라북도 -- 시급성이 필요하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1. ~ 6. (현행과 같음)
- 7. 경관지구(「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불

촉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

일치 -----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84조제5항제3호-----

----- 것으로써 -----

-----.

④ ----- 영 제84조제5항제4호-----

-----.

----- 위원회 -----

-----.

⑤ ----- 영 제84조제5항제5호-----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⑥·⑦ (생략)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생략)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

-----.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현행과 같음)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용적률 -----

--- 위원회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② (생략)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
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
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
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
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2. (생략)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
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
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
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 한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
한 용적률의 완화) ① -----

----- 인정되는 경우 -----

-----.

1.·2.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 건축하
려는 -----

이하로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별)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1. ~ 4. (생략)

제6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

----- 적용
----- .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별) -----

----- 한정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제66조(기능) ----- 위
원회의-----
-----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 3. (생략)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토지이용 · 건축 · 주택 · 교통 · 환경 · 방재 · 문화 · 농림 ·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 다른-----
----- 하도록 정한
사항의-----

2. · 3. (현행과 같음)

4. -----
- 회의에 부치는 -----

제67조(구성) ① -----

- 이하-----.

② 위원장-----
----- 위촉하며, -----
-----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

④ 위원-----

-----.

1. · 2. (현행과 같음)

3. -----

----- 관련분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⑦ (생략)

제69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
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신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있다.

⑤ -----
----- 한 번만-----
----- . -----

----- 전임자 임기-----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69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
음)

<삭제>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
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
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
다.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
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위
원은 둘-----
-----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⑤ (생략)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략)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 호선(互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 심의·자문-----.

1. ----- 심의·자문 -----

2. ----- 심의·자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

----- 요청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생략)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 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79조(자료·설명요청) ① (생략)

② ----- 위원회-----

-----.

제75조(수당 및 여비)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자료·설명요청) ① (현행과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같음)

② -----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83조(준용) -----

----- 준용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

----- 따른다. -----
-----.

제85조(시행규칙) ----- 시행에-----
-----.

<현 행>**【별표 5】****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안>**【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층수에 따른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현 행>**【별표 20】****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안>**【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다. 삭제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남원시공고 제2015 -108호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 공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 월 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1. 공인 신조 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2.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15. 1. 20
3. 관련조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신조공인명 및 인영

| 구분 (폐기/등록) | 공인명 | 규격·서체 (cm) | 재질 | 인영 | 관리부서 |
|---------------|--------------------|---------------|----|--------------------------------------------------------------------------------------|------|
| 등록 | 남원시송동면장 인인증기 전용 | 2 * 2 전서체 | 고무 |  | 송동면 |
| 등록 | 남원시대산면장 인인증기 전용 | 2 * 2 전서체 | 고무 |  | 대산면 |

◎ 공인 폐기

1. 공인 폐기 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2.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15. 1. 20
3. 관련조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4. 폐기공인명 및 인영

| 구분 (폐기/등록) | 공인명 | 규격·서체 (cm) | 재질 | 인영 | 폐기부서 |
|---------------|-------------------|---------------|----|--------------------------------------------------------------------------------------|------|
| 폐기 | 남원시송동면장인 인증기전용 | 2 * 2 전서체 | 고무 |  | 송동면 |
| 폐기 | 남원시대산면장 인인증기전용 | 2 * 2 전서체 | 고무 |  | 대산면 |
| 폐기 | 남원시사매면장 인인증기전용 | 2 * 2 전서체 | 고무 |  | 사매면 |